

第10回安山市議會 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(附錄)

安山市議會

目 次

1. 安山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審查報告書
(審查報告 : 林興茂議員) 41面
2. 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(審查報告 : 林興茂議員) 42面
3. 安山市議會事務機構의 設置 및 事務職員定數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
(審查報告 : 林興茂議員) 43面
4. 安山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(審查報告 : 林興茂議員) 44面

安山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審查報告書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 提出日字 : '92. 2. 7

○ 提出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'92. 2. 12

다. 上程日字 : 第10回安山市議會(臨時會)

第1次 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 등 審查特別委員會議('92.2.13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局長 李奎承)

가. 提案理由

○ 改正된 現行 地方稅法上 非營利事業者가 固有의 事業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課稅對象이 뿐만 아니라 醫療業,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은 課稅對象으로 轉換되었으나,

○ 國家有功團體는 課稅對象인 부동산 임대업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며, 현재 地方稅를 免除받고 있으므로 國家有功者에 대한 支援側面에서 계속 地方稅 免除措置가 必要함.

나. 主要骨子

○ 國家有功團體가 固有事業運營資金 마련을 目的으로 貸貸, 其他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財產稅, 綜合土地稅 및 都市計劃稅 免除

○ 適用時限은 1994. 12. 31까지 適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檢討報告 : 專門委員 林鍾浩)

○ 國家有功團體가 固有事業 運營資金 마련을 目的으로 임대, 其他受益事業에 活用하여 取得 또는 所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財產稅 綜合土地稅 및 都市計劃稅를 免除해 주도록 配慮한 條例는 國家有功者에 대한 예우 및 支援 趨旨에 부합하다고 보며 上位法規에도 抵觸되지 않는다고 料됩니다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疑要旨	答辯要旨
○ 國家有功團體에서 確保하는 運營資金이 公의상으로 쓰여지는지?	○ 安山市에는 아직 適用對象이 없으나 大韓傷痍軍警會, 戰歿軍警未亡

質疑要旨	答辯要旨
○ 적용대상 國家有功團體가 安山市에 있을 경우 社團인가, 小數團體인가?	人會동 國家有功團體에서 앞으로 이러한 公益事業을 할 경우에 대해서 條例를 制定함.
○ 法人團體이며 中央團體의 支會나支部 性格이 될 것임.	○ 法人團體이며 中央團體의 支會나支部 性格이 될 것임.

5. 討論要旨

- 國家有功團體에 適用되는 稅制減免 條例이며,
- 地方稅法 規定에 依據 全國共通으로 準則案이 시달되어 制定하는 것으로서,
- 國家有功者에 대한 예우, 支援趣旨에 附合되는 條例로 타당함.

6. 審查結果

- 原案議決

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

審查報告書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 提出日字 : '92. 2. 7

○ 提出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'92. 2. 12

다. 上程日字 : 第10回 安山市議會(臨時會)第1次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 등 審查特別委員會議('92.2.13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局長 李奎承)

가. 提案理由

○ 地方稅法 改正('92.1.1)으로 인한 法規와 重複되는 條例規定 削除

○ 세율을 현실에 맞게 調整하고 기타現行 條例上에 未備點 補完 改正

나. 主要骨子

○ 消防共同施設稅 削除(道稅로 轉換)

○ 稅率, 納期, 各種申告義務, 加算稅徵收등의 條項을 法令에서 위임한 事項만 條例로 정하고 削除

○ 住民稅등 法人균등할을 現行 15,000 원 50,000원에서 500,000원까지 調整

○ 事業所稅中 재산할의 標準稅率을 現行 3.3m²당 500원을 1m²당 250원으로 調整

○ 各種 申告義務 期間을 30일로 調整, 申告義務가 重複되는 경우에는 1回 申告로 갈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

(檢討報告 : 專門委員 林鍾浩)

○ 本 改正條例는 地方稅法이 改正됨에 따라 구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으로 주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세수증대를 도모하였으며,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,

○ 京畿道 市·郡條例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서 시의 적절하며 他法令이나 규정에 抵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疑要旨	答辯要旨
○ 住民稅 法人균등 할이 現行 15,000 원에서 改正條例에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차등 적용한다고	○ 法令에서 委任한範圍의 최하한선이 5만원이므로 5만원이하는 내릴 수 없음.